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 폐지〉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25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792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 폐지(제12조제6항 삭제)	2
※ 참고자료	7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792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 폐지(제12조제6항 삭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¹⁾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12조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⑥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현행법 제12조제6항²⁾ 및 제19조제10항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⁴⁾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⁵⁾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

지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는 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공급을 제한하여 차량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6월 30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후 교통혼잡도가 높은 대도시인 서울, 부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한 대상 지역 및 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일정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⁶⁾,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해 설치를 제한한 사례는 이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약 30년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⁷⁾.

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580호, 2025. 3.27., 일부개정]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④ (생략)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585호, 2025. 4.16., 일부개정]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제한 지역은 별표 1의 1급지 중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제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단,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4개 지자체(과천시, 하남시, 영천시, 남해군)에서 조례

이에 개정안은 교통혼잡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제한 제도는 유지하되 오랜 기간 운용되지 않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급을 제한하고자 할 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차이점이 달리 없다는 점⁸⁾,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여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고 현재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이 제도 폐지로 규제가 완화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에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한 사례는 없음.(참고 1. 참조)

8)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구분	내 용	설치주체		실례
노외 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		
		민간		
부설 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 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 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수요를 유발 하는 시설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 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관련 조례 현황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2.>

1. 제한지역 : 별표 1의 2구역(2급지)의 상업지역
2. 제한기준 : 노외주차장의 경우 그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범위에서 정한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6조(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3.10.>

1. 제한지역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 제한기준 :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10.>

영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주차장의 설치 제한) 법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동 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남해군 주차장 조례

제10조(주차장의 설치제한 등) 법 제12조제6항,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한다.<개정 2005. 8. 4., 2009. 7. 10., 2015. 10. 2.>